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77-9151~2 / 전송 774-679

열재
 1993. 12. 28
 교통국장
 1469

문서번호 주차 91114- 1508

시행일자 '93. 12. 2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 결재

참조

고시공고
 1993. 12. 28.
 제1469호
 458

취급		시	장
보존	10년	법무담당관실 상철 협조	
교통국장	전 결		
주차계획담당관			
교통시설계장			
기안	이 익 구		

제목 도시계획사업(시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고시

1. 지교30310-4804('93.12.27)호의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473호('83.9.13)로 도시계획사업(시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 되고, 서울시고시 제712호('84.12. 1), 같은고시 제69호('85. 2. 5), 같은고시 제431호('85. 6.29), 같은고시 제573호('85. 8.30), 같은고시 제127호('86. 3. 4), 같은고시 제395호('86. 6.16), 같은고시 제630호('87. 9. 9), 같은고시 제495호('88. 6. 1), 같은고시 제371호('89. 7.31), 같은고시 제561호('89.12.29), 같은고시 제443호('90.12.29), 같은고시 제370호('91.12.26), 같은고시 제453호('92.12.28)로 도시계획사업시행(실시계획) 변경허가(인가)된 상봉시의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제31조의10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 내역

○ 사업(준공) 기간

변경 전 : '93. 12. 31
 변경 후 : '94. 12. 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인가
 1993. 12. 28

첨 부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사본 1 부. 끝.

(제 2 안)

수신 : 중랑구청장

참조 : 지역교통과장

제목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통보

1. 지교 30310 - 4804('93.12.27)호와 관련임.

2. 서울시고시 제473호('83.9.13)로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 되고, 서울시고시 제712호('84.12. 1), 같은고시 제69호('85. 2. 5), 같은고시 제431호('85. 6.29), 같은고시 제573호('85. 8.30), 같은고시 제127호('86. 3. 4), 같은고시 제395호('86. 6.16), 같은고시 제630호('87. 9. 9), 같은고시 제495호('88. 6. 1), 같은고시 제371호('89. 7.31), 같은고시 제561호('89.12.29), 같은고시 제443호('90.12.29), 같은고시 제370호('91.12.26), 같은고시 제453호('92.12.28)로 도시계획사업시행(실시계획) 변경허가(인가)된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 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 공보1담당관

제목 : 시보게재 의뢰

1.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을 시보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명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변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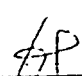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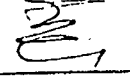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첨부 : 고시문 사본2부. 끝.

주 차 계 획 담 당 관

고 시 " 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심사 담당자	(9)368 심사	368 검토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473호(83.9.13)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시행 허가되고 서울시고시 제712호(84.12.1), 같은고시 제69호(85.2.5), 같은고시 제431호(85.6.29), 같은고시 제573호(85.8.30), 같은고시 제127호(86.3.4), 같은고시 제395호(86.6.16), 같은고시 제630호(87.9.9), 같은고시 제495호(88.6.1), 같은고시 제371호(89.7.31), 같은고시 제561호(89.12.29), 같은고시 제443호(90.12.29), 같은고시 제370호(91.12.26), 같은고시 제453호(92.12.28)로 도시계획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허가(인가)된 상봉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실과 중랑구 지역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 12.

서울특별시 장

변 경 사 항

- 가.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다. 면적 또는 규모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3 - 1(주)신아주, 대표이사 문재영

마.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 : 변경없음

- 준공예정일 [당초 : 1993. 12. 31
 변경 : 1994. 12. 31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사. 기타사항 : 변경 없음

아. 관련도서 : 생략